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 소개

김병태* · 정준혁** · 김광복***

I. 머리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이 지난 2016년 2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6년 8월 13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의 신속한 추진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분야의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및 세법의 관련 규제에 대하여 여러 특례를 도입하였다. 이하에서 기업활력법의 주요 내용과 고려사항 및 향후 전망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본다.

II. 기업활력법의 주요 내용 및 적용상 고려사항

1. 개요

사업재편¹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이 기업활력법에 따른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재편계획을 작성하여 주무 부처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업활력법 제9조 제1항).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계획의 승인과정을 간략히 도해하면 (그림 1)과 같다.

이하에서 (그림 1)의 단계별 기업활력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1)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신청

기업활력법은 기업규모나 업종을 불문하고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재편을 하는 정상 국내 기업에 적용된다(제4조). 따라서 기업활력법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해 기업이 작성하는 사업재편계획에는 사업재편의 필요성, 사업재편의 추진 내용과 사업재편계획기간(3년 이하), 기업결합 신고서류(사업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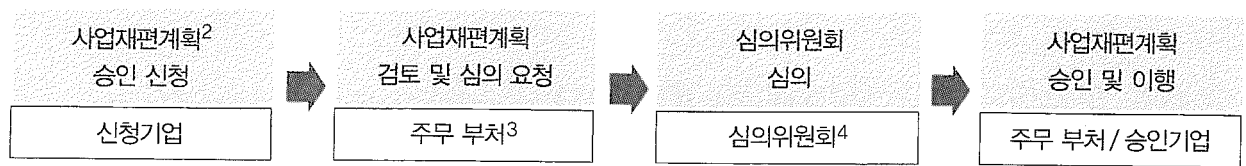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1 '사업재편'이란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산성을 상당 정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기업활력법 제2조 제2호).

가. 합병, 분할, 주식의 이전·취득·소유, 회사의 설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

나.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분야나 방식을 변경하여 신사업에 진출하거나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사업의 혁신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그림 1)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계획의 승인과정

재편이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재편에 따른 노사협의 및 고용조정 등에 관한 사항 등 여러 사항과 함께 사업재편을 추진하려는 사업 분야가 과잉공급 상태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제9조 제2항 및 제3항). 여기에서 '과잉공급 상태'란, 기업이 영위하는 업종의 국내외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또는 향후 상당 기간 공급의 증가, 수요의 감소 등으로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비용 대비 제품·서비스의 가격변화율이 상대적으로 둔화되는 등 경영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제2조 제4호).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에는 과잉공급 여부의 판단기준 등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을 위한 세부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제7조 제2항 제2호). 사업재편을 추진하려는 사업 분야가 과잉공급 상태임을 입증하여야만 기업활력법에 따른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대통령령 및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의 제정 내용에 따라 기업활력법의 적용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될 것이다.^{5·6}

2 '사업재편계획'이란 기업이 사업재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을 목적으로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기업활력법 제2조 제3호).

3 '주무 부처'란 사업재편계획의 대상이 되는 해당 사업 분야의 진흥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다만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주무 부처를 정한다(기업활력법 제2조 제5호).

4 사업재편계획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두며, 심의위원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재편계획에 관한 실시지침(이하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및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기업활력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 5 참고로 기업활력법의 모델이 된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産業競争力強化法)의 경우 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요건으로 (i) 사업재편계획이 실시지침에 비추어 적절할 것, (ii)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구조조정 실시의 확실성, (iii) 사업재편에 따른 생산성 향상의 지속성, (iv) 과잉공급구조에 해당할 경우 사업재편에 의한 과잉공급 해소 가능성, (v) 직원의 지위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vi) 둘 이상의 사업자가 신청한 경우 다른 사업자와의 적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일반 소비자 및 관련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우려가 없을 것을 정하고 있다(산업경쟁력강화법 제24조 제5항). 즉 산업경쟁력강화법상 과잉공급구조 해당 여부는 사업재편계획 승인의 필수적인 고려사항은 아니며, 다만 주무 부처는 사업재편을 실시하려는 사업 분야가 과잉공급구조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업재편계획을 통하여 과잉공급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일본에서 산업경쟁력강화법에 따라 승인된 사업재편계획안(총 27건) 중에서 명시적으로 해당 사업 분야가 과잉공급구조에 해당한다고 밝힌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는 아마도 산업경쟁력강화법상 '과잉공급 해소'가 사업재편계획의 필수적 승인요건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토사전기철도·토사전기드림서비스·고치현교통의 사업재편계획에서 사업재편 이유 및 필요성에 대하여 인구 감소 및 이용자 감소에 따라 각 회사가 단독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적자의 지속)이므로 공동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사업 분야를 통합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라 밝힌 사례(일본 국토교통성, "토사전기철도주식회사, 토사전기드림서비스주식회사 및 고치현교통주식회사의 산업경쟁력강화법에 기초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에 관하여," <http://www.mlit.go.jp/common/001055958.pdf> (2016. 3. 2. 확인)) 및 이와 유사하게 도쿄도민은행과 야치오은행의 사업재편계획에서 지역금융시장의 경쟁 심화 및 경영 환경 악화에 따라 사업을 통합하며 경영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한다고 밝힌 사례(일본 금융청, "인정사업재편계획의 내용 공표," <http://www.fsa.go.jp/news/26/ginkou/20140929-2/01.pdf> (2016. 3. 2. 확인)) 정도가 발견된다.

- 6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제정된 사업재편 실시지침(事業再編の實施に關する指針)에 따르면 과잉공급구조

(2)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심의·승인

사업재편계획이 접수되면 주무 부처의 장은 접수된 날로부터 최대 6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업종의 과잉공급 여부 판단 등 사업재편계획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해당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최대 6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제10조 제2항 및 제3항).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시 주무 부처의 장은 신청기업의 기술 역량·자금 등 경영자원과 해당 업종의 과잉공급 완화 또는 해소에 기여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신청기업이 사업재편을 통하여 사업재편계획기간 중 달성하고자 하는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에 관한 일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제10조 제4항). 그러나 주무 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생산성 향상보다는 경영권의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하지 않아야 한다(제10조 제6항).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주무 부처의 장이 승인 여부 및 해당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지원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결정하여 신청기업과 심의위원회에 통보하고 공표하여야 하며, 신청기업과 심의위원회는 승인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제10조 제8항 및 제9항).⁷⁾

한편 주무 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승인기업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 또는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이후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경영권의 승계,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 승인을 취소하여야 하며,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상 계획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재편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해당 기업에게 기업활력법에 따른 지원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해당 기업이 금전적 혜택을 받은 경우 이는 환수된다(제14조 제1항 및 제2항).

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i) 과잉공급구조 판정대상이 되는 업종에 대하여 (ii) 과잉공급 상태가 (iii) 장기간 지속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i) 과잉공급구조의 판정대상이 되는 업종 등의 범위를 특정하는 기준으로는 '상품 또는 용역의 기능이나 효용이 수요자에게 동등이거나 서로 대체 관계에 있고, 그 생산 또는 제공방법 등에 대하여 업태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을 것'을 정하고 있으며, (ii) 과잉공급 상태의 기준으로는 '최근 3년간 매출액 영업이익률의 평균치가 과거 20년간 매출액 영업이익률의 평균치보다 15퍼센트 이상 감소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요인이 제품·서비스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서비스의 가격의 연평균하락률보다 비용의 연평균 하락률이 작아야 하고, 제품·서비스의 가격이 하락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제품·서비스의 가격의 연평균 상승률보다 비용의 연평균 상승률이 커야 하며, (iii) 그 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전망이다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해당 업종이 수요 회복으로 이어질 시장 상황에 큰 변화를 가져올 사건이 예상되지 않거나 '수요의 변화에 대해 기본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업태의 특성이 있을 것'을 정하고 있다. 이를 판정하기 위하여 정부·공공기관 등이 작성하거나 판정대상이 되는 업종 등에 관한 통계 또는 이에 준하는 통계를 사용하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사 업종의 통계를 이용할 수도 있다(事業再編の實施に關する指針2條口項(3)號 참조).

- 7) 참고로 그동안 일본 경제산업성 등에서 공표한 산업경쟁력강화법 등에 의하여 인정된 사업재편계획의 전반적 상황을 살펴보면, 1999년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이 법의 정식명칭은 산업 활력의 재생 및 산업활동의 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産業活力の再生及び産業活動の革新に關する特別措置法)으로, 이 법은 산업경쟁력강화법 제정 이전에 그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였던 것이다)의 제정 이후 총 612건(2004. 4. 1. 개정 전 204건, 개정 후 408건)의 사업재편이 승인되었고(일본 경제산업성 산업구조과,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 인정 일람표," http://www.meti.go.jp/policy/jigyousaisei/sankatsuhou/nintei/pdf/h15_b/4-1.pdf(2016. 3. 2. 확인); 일본 경제산업성 산업재생과, "산업 활력의 재생 및 산업활동의 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인정 일람표," <http://www.meti.go.jp/policy/jigyousaisei/sankatsuhou/nintei/ninteiichiran140108.pdf>(2016. 3. 2. 확인)), 2014년 산업경쟁력강화법 시행 이후에는 2016년 2월까지 총 27건(사업재편계획 22건, 특정사업재편계획 5건)이 승인되었다고 한다(일본 경제산업성, "인정계획," http://www.meti.go.jp/policy/jigyousaisei/kyousoukyoku_kyouka/nintei.html(2016. 3. 2. 확인)).

(3) 승인된 사업재편계획의 이행과 특례

승인기업은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여부와 실적 등을 주무 부처의 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제11조 제1항),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이 종료되면 주무 부처의 장은 그 승인기업의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 달성 여부 등에 대하여 공표하여야 한다(제11조 제6항). 또한 승인기업은 예상할 수 없었던 경제 상황이나 정책 환경의 변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승인된 사업재편계획의 추진이 어려운 경우, 승인된 사업재편계획의 변경을 신청하거나 사업재편계획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제12조 제1항).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되면 승인기업은 신청된 사업재편계획서에 적시된 지원 내용 중 주무 부처의 장이 구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에 따라서 기업활력법에 의한 지원을 받게 되는바(제10조 제10항), 아래에서 항을 바꾸어 그 주요한 내용 및 그와 관련된 약간의 고려사항을 살펴본다.

2. 상법, 자본시장법에 대한 특례

기업활력법은 기업의 조직재편과 관련된 상법 및 자본시장법 규정에 대해 여러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례는 대부분 소액주주나 채권자보호를 위해 인정되는 수단(예를 들어 주식매수청구권, 채권자 이의제출)을 제한하거나 조직재편에 필요한 절차(주주총회 소집기간, 주주총회 승인)를 간소화하는 것들이다. 그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소규모분할 관련 특례(제15조)

상법은 합병, 분할합병, 주식교환에 대해서는 발행·이전하는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소규모조직재편제도를 인정하고 있지만, 분할에서는 이러한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다. 기업활력법은 소규모분할제도를 도입하여 분할로 설립되는 신설회사의 총자산액이 분할되는 승인기업 총자산액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소규모분할은 사업재편계획 기간 중 한 차례만 시행할 수 있다.

(2) 소규모합병, 분할합병, 주식교환 관련 특례 (제16조)

소규모합병, 소규모분할합병, 소규모주식교환은 각각 (i) 존속회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해당 조직재편으로 발행·이전하는 신주 및 자기주식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적용된다(상법 제360조의10 제1항; 동법 제527조의3 제1항; 동법 제530조의11 제2항). 이 경우 주주총회 승인 없이 이사회 승인만으로도 진행이 가능하지만, 만일 (ii) 존속회사나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0퍼센트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소규모조직재편에 따른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상법 제360조의10 제5항; 동법 제527조의3 제4항; 동법 제530조의11 제2항).

기업활력법은 위 (i)의 요건을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완화하여 승인기업이 보다 쉽게 소규모조직재편에 해당할 수 있게 한 반면(제16조 제1항), 만일 승인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반대를 하면 소규모조직재편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제16조 제2항). 이는 합병소멸회사 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규모가 조금 크더라도 소규모조직재편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사업재편이 가능하게 하면서도, 소수주주보호를 위해 소규모조직재편에 반대하는 주주가 20퍼센트가 아닌 최소 10퍼센트 이내의 일정한 비율의 주식만 소유하여도 정식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승

인을 받도록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속한 사업재편과 주주보호 간에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기업활력법 제16조는 (i) 소규모조직재편의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상법의 합병(상법 제527조의2 제1항)과 분할합병(상법 제530조의11 제2항)규정만 언급하고 있으며, (ii) 반대주주요건 강화에 대해서는 상법의 합병(상법 제527조의3 제4항)과 주식교환(상법 제360조의10 제5항)규정만 기재하고 있다. 이를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기업활력법을 적용받을 경우 주식교환은 상법에 의한 때보다 소규모주식교환을 진행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입법자가 의도한 것에 비해 과도하게 용이해지는 어색한 결과가 발생한다. 입법자의 의도는 합병·분할합병·주식교환 전부에 관하여 위 특례를 규정하는데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그러한 취지가 명료하게 반영되어 해석상 불확실성이 없도록 해당 규정을 적절히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관련 특례(제17조)

기업활력법은 합병존속회사가 합병소멸회사 발행주식총수의 80퍼센트 이상(상법에서는 90퍼센트 이상)만 소유하더라도 간이합병규정이 적용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 각종 기간 단축(제18조)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중요영업양수도(이하 '합병 등')를 실행함에 있어 적용되는 각종 기간을 단축하였다. 즉 주주총회 소집기간을 2주 전 통지에서 7일로(제1항), 합병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비치 시작기간을 주주총회일 2주 전에서 7일 전으로(제2항), 주주명부 폐쇄나 기준일 설정 공고기간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2주 전에서 7일 전으로 단축하였다(제3항).

그런데 위 특례기간 산정 시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은 제외되므로(제4항) 실제로는 각각 2주에서 짧게는 9일까지 단축되는 셈이다.

서류 비치와 관련된 규정에는 분할합병 관련 상법규정(상법 제530조의7 제2항)이 빠져 있는데, 특별히 다르게 볼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이에 관하여서도 적절한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5) 채권자보호절차 관련 특례(제19조)

기업활력법은 합병·분할(연대책임을 배제하는 경우), 분할합병 시 요구되는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을 1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하였다(제1항). 위 특례기간 산정 시에도 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은 제외되므로(제3항) 실제로는 최소 12일 이상의 기간은 필요하게 된다.

나아가 승인기업이 합병 등을 함에 있어 채무에 대한 은행 지급보증 또는 보험증권 등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32조 등 채권자보호절차와 관련한 상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제2항). 이 경우 (i) 통지 및 공고절차·채권자 이의제출·이의제출 시 변제·담보제공·재산 신탁 등 채권자보호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아니면 (ii) 통지 및 공고와 이의제출 기회의 제공은 하되 이의제기 시 변제 등을 할 필요가 없는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문언 자체에 충실하게 본다면 (i)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측면은 있다. 아울러 은행 지급보증 또는 보험증권 등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고, 심의과정에서 신청기업이 심의위원회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

8 본 규정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이러한 지급보증이나 보험증권 등의 상품을 취급하여야만 실효성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 지급보증이나 보험증권 구입에는 비용이 소요되므로, 실제 채권자들의 이의제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면 일반 채권자보호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6)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특례(제20조)

회사의 조직재편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를 통지한 후 주주총회 결의 일로부터 20일 내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374조의2 제1항;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1항). 그런데 기업활력법의 적용을 받으면 위 기간이 20일에서 10일로 단축된다(제1항).⁹ 승인기업이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기간도 비상장법인의 경우 2개월(상법 제374조의2 제2항)에서 6개월로, 상장법인의 경우 1개월(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2항)에서 3개월로 각각 연장된다(제2항). 이는 사업재편의 과정에서 회사의 자금 부담을 줄이는 데에 도입 취지가 있다.

(7) 특례에 따른 사업재편의 실행상 약간의 고려사항

승인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승인기업이 사업재편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합병계약과 분할계획서 등 사업재편의 기본이 되는 서류의 작성이 필요하고,

합병등기 등 조직재편을 위해 필수적인 상업등기가 이루어져야 할 수도 있으며, 기업활력법에서 별도의 관련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자본감소절차가 병행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승인기업이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기업활력법의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재편의 실행에 있어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여러 규정의 준수와 관련 절차에 관하여 금융감독원, 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업활력법에 의한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재편에 있어 승인기업은 해당 특례의 내용이 사업재편의 기본 서류에 적절히 반영되고 해당 특례의 적용이 없거나 그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여타 사업재편 관련 절차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사업재편 일정을 수립하는 등 상기 사항에 유념하여 해당 사업재편을 실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공정거래법에 대한 특례

기업활력법은 공정거래법상 ① 기업결합심사, ② 지주회사규제 및 ③ 대규모기업집단규제와 관련하여 일정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바, 그 주요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기업활력법상 공정거래법에 대한 특례

항목	주요 특례사항	주요 취지 ¹⁰
기업결합 심사 관련 사항		
기업결합 신고	- 주무 부처의 장에게 사업재편계획 제출 시 기업결합신고의제(제9조 제5항) - 공정거래위원회의 효율성 증대 효과 판단 시 이를 인정하는 주무 부처의 장의 의견을 고려해야 함(제10조 제7항)¹¹	- 기업결합신고 창구 단일화로 신속한 심사 도모 - 기업결합 심사 시 사회적 효율성 증대 효과 적극 반영

9 반대주주로서는 주주총회 결의 후 보다 신속하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되므로, 이러한 기간 단축이 실제 승인기업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다소 미지수이다.

10 이에 관하여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산업통상자원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2015. 10) 참조.

11 상기와 같이 기업활력법은 기본적으로 해당 업종의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사업재편의 경우에 적용되는데, 그 과정에서 개념적으로 해당 업종에서 경쟁 제한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측면이 강조되면 기업활력법에 의한 사업재편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는 주무

지주회사규제 관련 사항 ^{12·13}		
지주회사규제(제21조)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한도(200% 이하), 자회사주식 보유 기준(상장법인 20%, 비상장법인 40% 이상), 비계열사 지분 보유 한도(5% 이하) 규제 3년간 미적용	- 사업재편과정에서 자금조달 곤란과 재무 부담 완화 - 전략적 제휴를 위한 지분 취득 지원
지주회사의 자회사규제(제22조)	- 자회사의 손자회사주식 보유기준(상장법인 20%, 비상장법인 40% 이상) 규제 3년간 미적용 - 일정한 요건¹⁴이 구비되는 경우, 자회사의 손자회사 이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규제 3년간 미적용	- 사업재편과정에서 자금 부담 완화 - 효율적 자원배분 도모 및 재무 부담 경감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규제(제23조)	일정한 요건¹⁵이 구비되는 경우, 손자회사의 완전증손회사 이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규제 3년간 미적용¹⁶	공동출자 허용으로 사업재편과정에서 과도한 재정적 부담 경감
대규모기업집단규제 관련 사항		
상호출자규제(제24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승인기업이 합병 등에 의한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가 발생하는 경우 그 해소기간 연장(6개월→1년)	합병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순환·상호출자의 경우, 계열회사 지분의 헐값 매각 우려 완화 및 사업재편을 위한 재원 마련 지원
채무보증규제(제25조)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소속 승인기업이 승인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채무보증 3년간 허용	합병 등의 사업재편과정에서의 자금조달 애로 완화

상기 지주회사규제 관련 특례사항은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과정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주회사그룹의 형성 이후 비로소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특례사항은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분할이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부처의 장이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인정하는 예외적 사유인 효율성 증대 효과에 관한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 원활한 사업재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효율성 증대 효과가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효율성 증대 효과가 당해 기업결합 이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일 것',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큰 경우일 것' 등 상당히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그러한 요건 충족의 입증은 사업자가 하여야 한다(동법 제7조 제2항 제1호). 더군다나 실제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율성 증대 효과를 이유로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을 승인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결합 심사 측면에서는 기업활력법의 절차가 주무 부처의 효율성 증대 효과에 관한 의견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것 외에 특별한 장점이 없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12 이에 관한 특례 및 대규모기업집단규제 관련 특례의 기간은 해당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개시한다(제26조). 또한 지주회사 관련 규제의 특례는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주무 부처의 장에게 '제출할' 당시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된다(제21조 제2항 본문; 제22조 제3항 본문; 제23조 제2항).

13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금융지주회사법이 적용되는바, 기업활력법과 공정거래법상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기업활력법에 규정된 지주회사 관련 규제의 특례는 주로 일반 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대하여 적용될 것이다.

14 (i) 승인기업이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해당할 것, (ii) 피출자기업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 해당할 것 및 (iii) 피출자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승인기업이 2개 이하일 것.

15 (i) 승인기업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 해당할 것, (ii) 피출자기업이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에 해당할 것, (iii) 각 승인기업이 피출자기업의 주식을 각각 50퍼센트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및 (iv) 피출자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승인기업이 2개 이하일 것.

16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최근 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외국인투자승인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관련 규제의 예외로서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데(동법 제30조 제6항, 제7항), 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입장에서 구제적 사정에 따라 위와 같은 특례와 기업활력법에 의한 상기 특례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전과 같은 사업재편과 관련하여 승인된 사업재편계획에 대하여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관련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기업활력법상 지주회사 관련 규제의 특례에 의하여 공동으로 출자하려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의 수는 2개로 제한되고, 따라서 해당 회사들(자회사 2개 또는 손자회사 2개)이 함께 공동출자와 관련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신청하여 그에 대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세제·자금 지원, 기타

(1) 세제 지원

기업활력법은 승인기업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제27조). 구체적인 세제 지원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표2>와 같다.¹⁷

<표2> 승인기업에 대한 주요 세제 지원

항목	주요 특례사항
양도차익 관련 과세특례	
자산양도로 채무상환 시 과세 이연(조특법 제121조의26)	• 채무건전성을 위해 자산을 양도하여 채무상환 시 자산양도차익 중 채무상환액에 대해서는 4년간 익금산입 유보 이후 3년간 균분하여 익금산입
주식매각 양도차익 과세이연 및 증권거래세 면제(조특법 제121조의30, 제117조)	•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보유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법인세를 양수한 주식 처분 시까지 이연 • 해당 주식교환에 대한 증권거래세(0.5%) 면제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이연(조특법 제121조의31)	• 합병 후 1년 이내에 중복자산을 처분하고 양도대금으로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3년간 익금산입 유보 이후 3년간 균분하여 익금 산입
채무 면제 관련 과세특례	
주주사의 자회사채무 인수·변제 시 과세특례(조특법 제121조의27)	• <u>주주사</u> : 주주사가 자회사채무를 인수·변제한 후 자회사 지분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 위 채무면제액을 손금에 산입 • <u>자회사</u> : 채무면제이익에 대해 4년간 익금산입 유보 이후 3년간 균분하여 익금산입 • <u>자회사 다른 주주</u> : 증여세 비과세(단 채무 인수·변제한 주주사의 특수관계인은 제외)
주주 등의 자회사에 대한 증여 시 과세특례(조특법 제121조의28)	• <u>자회사</u> : 주주사로부터 금융채무면제 위해 자산을 수증 받은 경우 수증재산가액에 대해 4년간 익금산입 유보 이후 3년간 균분하여 익금산입 • <u>주주 등</u> : 법인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손금에 산입(자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소득세 면제 및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u>자회사 다른 주주</u> : 증여세 비과세(단 증여한 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은 제외)
금융기관에 의한 채무면제 시 과세특례(조특법 제121조의29)	• <u>회사</u> : 채무면제액에 대해 4년간 익금산입 유보 이후 3년간 균분하여 익금산입 • <u>금융기관</u> : 면제한 채무금액을 손금에 산입
등록면허세 관련 특례	
등록면허세 감면(지특법 제57조의2)	• 합병 등 사업재편 시 법인등기에 대하여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를 50% 감면(2018. 12. 31.까지)(이 경우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 부과 가능)

17 조특법 및 지특법상 세제 지원 관련 규정은 기업활력법이 제정되기 전인 2015년 12월 15일 및 12월 29일에 이미 각각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상법 및 공정거래법 관

련 특례 규정이 마련되기 전에 세제 지원 관련 규정은 이미 마련되어 있었던 셈이다.

조특법상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자산양도·주식 처분 등 특례를 인정받기 위한 거래를 완료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업활력법의 만료기간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2) 자금 지원, 규제 애로 해소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하여 각종 자금 지원, 연구개발 활동비용 지원을 하고 중소·중견기업인 승인기업에 대한 지원, 근로자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28~제31조).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신청기업 및 승인기업은 주무 부처의 장에게 사업재편 및 관련 사업활동에 적용되는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제32조) 행정규제 개선요청을 할 수도 있다(제33조).

III. 향후 전망

위와 같이 과잉공급기준 등 기업활력법의 주요 사항의 내용이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어서 그 해석·적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는 아직 이르다. 다만 기업활력법의 입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기업활력법의 문언상 일부 불확실한 측면을 최대한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위 법령의 내용이 충실히 규정되고, 무엇보다도 심의위원회·주무 부처의 장을 비롯한 기업의 사업재편에 관여하는 여러 유관기관에서 기업활력법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대하여 적극적인 목적론적 해석·적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아무쪼록 우여곡절 끝에 도입된 기업활력법이 그 취지에 맞게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